

제 867 호
1981.11.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박영수
편집 : 문화공보관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 례

고 시		
제 399 호 :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3
제 40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3
제 402 호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고시	4
제 403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4
제 404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6
공 고		
제 304 호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공고	8
제 70 호 (종로구) :	개인공고	9
제 335 호 (강남구) :	개인공고	9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5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99호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

1. 서울영동 2-1지구내 도시계획시

설(운동장)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4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 고시한다.

1981. 11. 4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변경(폐지)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운동장	영동 2-1지구 320부락	907평	
변경	·	·	·	폐지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0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50호(81.7.4)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1.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동작구신대방동 366-133	10,100㎡	
변경	·	·	9,571㎡	감 529㎡

나. 도면: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02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고시

1. 도시재개발사업 무교구역 및 청진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
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아태와 같
이 지정한다.

1981. 11. 5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 내역

구역명	면적	인가신청기간
무교구역	40,900 ㎡	81.11.5 - 82.12.31
청진구역	77,780 ㎡	"

◎ 서울특별시고시제 403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고시제 131호 (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256호(76.10.2)
로 아파트 지구 지적승인된 강남
구청담동 330-1의 19필지 (영동 4-2
주구) 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동법시행령제 24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조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 (주
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1. 5
서울특별시장

아파트지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가. 사업시행자 : 동성종합건설 (주)
대표 하영순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강남구 청
담동 330번지 1의 19필지 (영동
4-2주구) 4,622.7평 (복록별첨)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형 :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
○ 사업규모 : 아파트 35평형 -52평형
230세대
○ 사업기간 : 81.11 - 82.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81.11.5
-11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지번조서: 재산(토지) 명세서

번호	지 번	면적 (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채비지 276-1	19.9	서울특별시		
2	276-4	329.3	"		
3	276-5	385.7	"		
4	276-6	133	"		
5	276-7	113.5	"		
6	277-1	61.4	"		
7	277-2	1,000.4	"		
8	청담동 108-12	74.4	하재업외 1	강남구반포동235신반포 2 지구	동성증합전생주 소유권이전
9	" 330-2	111	김 태 현	강남구청담동시영주택 10단지 32호	"
10	삼성동 163-22	71	김 상 직	종로구관철동 19-15	"
11	" 163-21	90	배 정 자	강남구삼성동 163-21	"
12	" 163-19	183.5	조 홍	강남구방배 2동경남 APT 6동 406	"
13	채비지 276-2	66.2	정 입 분	서대문구창천동 356-2	"
14	청담동 334-1 333-2	643	조 미 옥	종로구내수동 110-15	"
15	채비지 262-1	66.7	배 원 교	도봉구미아동 192-7	"
16	청담동산 50-3	1,020.8	조 석 래	종로구명륜동 1가 5-330호	토지사용승락
17	" 330-3	95.9	조 양 래	성북구선북동 1가 120	"
18	" 330-1	89	주 백	강남구청담동시영주택 10 단지	
19	" 108-10	41.8	김 창 덕	성동구군자동 125-109	
20	삼성동 163-20	26.2	김 영 선	마포구성산동 134-59	
	총 계	4,622.7			

◎ 서울특별시고시제 404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고시제 131호(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256호(76.10.2)로 아파트지구 지정승인된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지구(제 3-2지구)일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 2조 및 동법시행령제 24조 행정권한위위위탁에 관한 규정제 29조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고시한다.

1981. 11. 5

서울특별시장

1.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가. 사업시행자 : (주) 삼호주택
(대표 조용시)
나. 사업시행구역 : 강남구 서초동 438번지의 40필지 (제 3-2지구)
일부지역 (특별침 34,330.07㎡)
다. 사업계획개요
○ 사업명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사업규모 : 아파트 25평 - 50평
(전용면적) 약 400세대
○ 사업비 : 약 23,588,500천원
○ 사업기간 : 81.10 - 83.8.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 81.11.6 - 81.11.13 (7일간)
마.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지 번 명 세 표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소	사용동의 여부 및 일자	비고
	환 지 전	환 지 후			
반포동 438	1,566㎡	2,004.3㎡	조 봉 구 빙배동 1번지 - 11	사용동의	
" 436-2	693㎡				
" 448	300㎡				
" 452-2	747㎡				
" 435	1,458㎡	1,463.5㎡			
" 445	1,058㎡				
" 446	5,455㎡				

지 번	면 적		소 유 주		사용동의 여부및일자	비고	
	환 지 전	환 지 후	성 명	주 소			
반포동 452-3	1,329 평	314.1	함 경 자	방배동1번지-11	사용동의		
• 452-5	1,236 평						156.4
서초동 145-1	1,623 평	1,533.2	조 봉 구	방배동1번지-11	•		
• 145-4	1,421 "						
• 99-5	724 "						
• 114-3	1,448 "						
• 110-2	1,669 "						
• 120	276 "						195.9
• 106-6	975 평						
• 108-3	258 "	345.7	1,414경				
• 109-2	430 "						
• 110-1	76 "						
• 143-2	1,092 평						212.4
• 151-1	1,653 평	660					
• 151-3	1,653 "						
• 144-1	346 평	258.1	한국도시개발주	양구정 준369-1			
반포동 452-7	392 "	356.5	정 몽 구	한남동1번지304			
• 452-6	111 "						
• 133	4,770 평	229.2	대한주택공사	학동산 12 번지			
영동2지구312							
2공구 부덕1호		66.8	최 배 영	이문동 163-22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사용동의 여부및일자	비고
	환 지 전	환 지 후	성 명	주 소		
서초동119	512 평	1,095.5	주 부 용	미아동534-105		
• 111	198 "					
• 112	268 "					
• 113-1	403 "					
• 113-2	1,057 "					
영동1지구313 2공구부덕1호		179.2	박 석 규	이문동 167-13		
서초동145-2	121 "	80.2	윤 종 진	등산동1가82		
• 144-2	358 "	219.9	윤 창 남	신당동236		
• 152	360 "	60.5	심 상 준	수색동:205-908		
			김 성 자	인현동1가67-34		
시유지334-1	398 평	398	서 울 시			
• 333-1	289.3	289.3	"			
• 332-2	120 평	120	"			
• 332-5	20.6 평	20.6	"			
332-4		118.9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04호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지급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1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981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1. 수당지급신청대상자
2.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
내에 자진퇴직하는 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계질상태로 되어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인자.

2. 수당지급대상인원 : 250 명

3. 수당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1981년 11월 20일
~ 1981년 11월 27일

나. 신청절차 : 수당지급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급하
여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
은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4.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
서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
지하고 지급한다.

5. 수당지급결정의 효력상실

수당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수당지
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의 장에
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수당지급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기타수당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종로구공고제 70 호

개 인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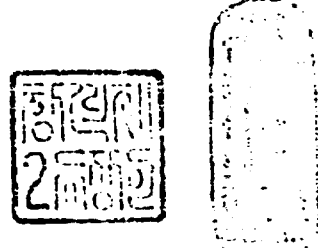
창신제 2동장 직인 및 개인이 광
기사용으로 마멸되어 서울특별시 공
인조례 제 6조에 의거 개각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81년 11월 2일

종 로 구 청 장

1. 사용일자 : 81.11.10

2. 직인의 인영

인 영	
--------	--

공인명 창신제 2동장직인 및 개인

◎ 강남구공고제 33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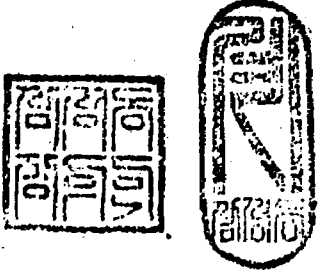
공인개각사용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장직인 및

계할을 개각 사용 승인하였거 동조바
계 9 조에 의거 이를 공표한다.

198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1. 개각사용 게시일 : 1981.11.11
09:00
2. 공인개각동 : 삼성동
3. 공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삼성동장직인및계인

사 령

◎ 1981년 11월 5일자 경재 438 호

경 리 파 장 임 경 선
서 기 관

지하철공사 파전 근무를 명함.
(81.11.1 - 81.12.31)

서 울 특 별 시 장